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1516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고B

변론 종결2022. 7. 15.

판결 선고2022. 8. 19.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266,1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66,11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차전17227호로 '3,484,799원과 그 중 2,771,545원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 법원 2021차전2368호로 '4,114,905원과 그 중 2,863,499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는데,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2021. 11. 25.을 기준으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의 합계는 8,266,118원(= 3,956,414원 + 4,309,704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채무자 C의 어머니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B), C(채무자), F, G, H가 있었으며, 그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2) 피고 및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20.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밀양시 I읍 J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서 '밀양시 I읍'은 생략하고, 'J리 이하 지번'만 표기한다)에 있는 각 부동산¹⁾을 모두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협의에 따라, 2017.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2. 22. L, M, N, O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1. 12. K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M, N, O, K은 L에 합병되어 이 사건 부동산인 L 대 1266㎡가 되었다.

다. C의 무자력

1)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 C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그 가액은 별지 2. 표 기재 중 1/5의 해당 부분과 같다.

2)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 C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일부의 경우는 원금만 기재되어 있음).

3)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9. 7.경 '망인의 사망 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일체의 상속권을 장남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차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확약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각서를 작성하였고, P은 2009.

7. 15. 망인의 명의로 C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C에게 Q의 계좌로 이 사건 협의 이후인, 2021. 6. 22. (P의 명의로) 1백만원, 2021. 11. 16. 9백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및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R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의 무자력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협의 당시의 C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공시지가로

계산한 망인 소유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는 244,318,357원²⁾ 이고, 이를 C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48,863,671원³⁾ (원 미만 버림)이며, 이 사건 협의 당시의 C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구 순번 4번)의 채무액 중 C의 지분 상당액이 2,800,000원⁴⁾ 이고, 별지 3. 표 기재 C의 채무 합계액이 13,151,915원인바, 위 채무액에는 일부 이자가 누락된 점,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의 대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한 점⁵⁾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C은 처분행위인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위 적극재산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2. 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의 대가로 각 2천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C의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C과 피고가 남매지간이라는 점, C이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Q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점, C이 2021. 피고로부터 1천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사건 협의를 하여준 점, 2009.에 지급된 1천만 원을 합쳐 보더라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별지 2. 표 기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 중 C의 지분 해당액(48,863,671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위와 같은 차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협의에 앞서 작성된 제소전 화해각서에 의하면, 장남인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 부양료 등을 책임지기로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속으로 인한 기여분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2. 8. 9. 피고의 형제들은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피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형제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서는 앞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8,266,1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는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24. 채권최고액 1천 4백만 원, 채무자 E(망인), 근저당권자 S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8. 2. 13.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과 가까운 2022. 1.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156,097,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1015조 본문), 이 사건 협의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1. 15.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C의 지분 상당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6)을 공제한 금액 중 C의 지분 상당액은

28,419,560원[= (156,097,800원 - 14,000,000원) / 5]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8,266,11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송송용

별지

1) 갑 제12호증에는 K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K의 이전등기 원인도 2017.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임을 알 수 있다.

2) = 156,097,800원 + 2,116,800원 + 57,068,500원 + 29,035,257원

3) = 244,318,357 ÷ 5

4) = 14,000,000원(채권최고액) ÷ 5

5)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협의의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의 당시까지 지급된 것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6)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공제함